일반구매론 계약서(구매기업용)

현 행	개 정	비고
제1조 ~ 제4조 <기재 생략> **제5조 (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)** ① <기재 생략> ②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거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은행은 지급보증 책임, 기타 승인명세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<신설> ③~⑤ <기재 생략> **제6조 ~ 제20조 <기재 생략>** <신설>	**제1조 ~ 제4조 <현행과 동일>** **제5조 (승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)** ① <현행과 동일> ②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거나 구매기업의 요청에 따라 은행이 지급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, 은행은 지급보증 책임, 기타 승인명세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<삭제>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. ③~⑤ <현행과 동일> **제6조 ~ 제20조 <현행과 동일>** 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	- 약관변경 권고 반영